

(19) 대한민국특허청(KR)
(12) 공개특허공보(A)

(51) Int. Cl.⁴B65D 85/72

(11) 공개번호 특 1985-0007047

(43) 공개일자 1985년 10월 30일

(21) 출원번호 특 1984-0007439
 (22) 출원일자 1984년 11월 27일

(30) 우선권주장 P3407899.1 1984년 03월 03일 독일(DE)
 (71) 출원인 피르마 인다크 게젤샤프트 뤼르 인두스트리-베다르프 엠베하
 독일 하이델베르크-에펠하임 데-6900, 루돌프-빌트-스트라세 4
 (72) 발명자 라이너 빌트
 독일 하이델베르크 스타이거백 57 베, 데-6900
 (74) 대리인 황주명

심사청구 : 없음**(54) 가요성 다층필름으로 제조된 음료용기 특히 음료주머니****요약**

내용 없음

대표도**도 1****명세서**

[발명의 명칭]

가요성 다층필름으로 제조된 음료용기 특히 음료주머니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압력탱크로서 전개되고, 이산화탄소 함유 음료를 충입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며 원통형 중앙 부분이 달려 있으며, 전 둘레에 걸쳐 끼움 접합에 의해 양쪽 전단부에 용접되어 있는 필름천과 바닥부분으로 만들어진, 투시도로본 음료용기. 제2도는 주머니에 총진후 안으로 용접된 바닥 상부를 통하여 제1도의 II-II 선을 횡으로 절단한 횡단면도. 제3도는 필름천과 바닥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정면부에 안으로 용접된 원통형 중앙부분을 가진 음료용기의 또 다른 모형의 측면도; 바닥부분은 중앙부분에서 떨어져서 이들면 상에서 접시형 부분으로 전개되어 있다.

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**청구항 1**

액체의 침투가 불가능한 용접 가능한 플라스틱로된 내부층과 항미가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견고한 중간층으로 구성되며, 그 한쪽으로 바닥내용접-자체 내포된 중앙부분이 있는 가요성 다층 필름으로 만들어진 음료용기, 특히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음료를 내부에 충입하기 위한 압력탱크로 구성되며 중앙부(11, 21)가 양쪽 단부상에 내용접바닥부분(13, 13' : 23, 23')을 자체 내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료주머니.

청구항 2

그 양단부상의 중앙부(11, 21)를 밀폐하는 바닥부분(13, 13' : 23, 23')들이 다른 부분과 동일한 물성이거나 적어도 균등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3

중앙부분(11, 21)이 적어도 하나의 필름천으로 만들어지고 튜브형을 이루며 용기의 세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가장자리를 따라 세로로 용접 이음매(12, 22)로 용접됨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4

중앙부분의 세로방향 용접 이음매(12, 22)와/혹은 바닥부분(13, 13'; 23, 23')을 중앙부분과 연결하는 용접 이음매(14, 14'; 24, 24')들이 끼워 접합으로 전개되고 단지 용기의 내부 압력에 의해서 “밀리는 힘”이 당겨지기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및 제3항중의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5

바닥부분(13, 13'; 23, 23')이 가장자리 테두리(15, 25)를 가진 모든 둘레에 걸쳐 있으며, 가장자리 테두리에 의해서, 중앙부분(11, 21)이 필름천이 가장자리에 인접되게 용접됨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중의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6

바닥부분(13, 13'; 23, 23')이 이들의 가장자리 테두리(15, 25)에 의해서 정면에서 중앙부분(11, 21)으로 넣어지는 것과 바닥부분들이 중앙 부분내로 용접되어 가장자리 테두리(35, 45)가 중앙부분(31, 41)의 내부를 가리키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5항에 따른 음료용기.

청구항 7

바닥부분(43, 43')들이 그 면상에 접시형 부분으로 전개되며 중앙부분(41)에서 떨어져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5항이나 제6항에 따른 음료용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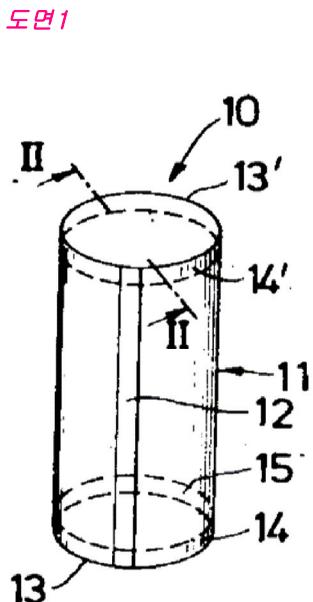
청구항 8

바닥부분(43, 43')중의 하나가 중앙부분(41)의 일측에서 떨어져서, 중앙부분에 용접되고,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바닥(43')의 중간부분은 충전 액체에 의해 기인되는 내부 압력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외부로 향하여 둥글게 튀어나오고, 중앙부분의 정면에서는 돌출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7항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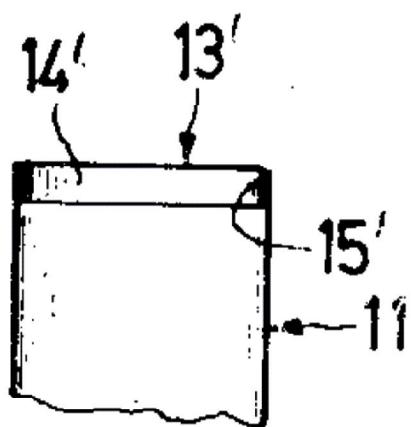
청구항 9

중앙부분(21, 31, 41)이 그 세로축에 관하여 로타리형으로 대칭되며, 특히 원통형으로 전개되며, 따라서 그 바닥부분은 내부로 용접된 테두리에 인접하여 반구형(43, 43')으로 전개됨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8항중의 하나에 따른 음료용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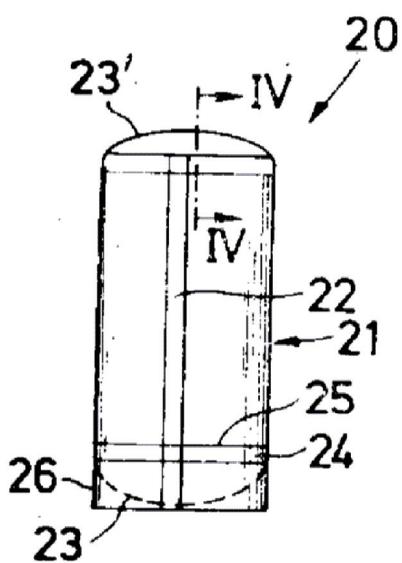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
도면

도면2



도면3



도면4

